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0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윤종호, 김상조, 김인배, 김정곤, 정근수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0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,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시에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,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신설(안 제9조)
-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신설(안 제10조~11조)
-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1조~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현재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, 까치 등에 대한 포획포상금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하고,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를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